

# K-BIZ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

www.towercrane.or.kr

우)1395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33, 인덕원골드프라자 5층 / TEL 031)422-2340 FAX 031)422-2833

타 위 협 : 2017 - 30호

2017. 4. 4.

수 신 : 회원사 제위

제 목 : 교섭창구 단일화(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안내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올해는 노동조합과 체결된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는 해로, 사용자와의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명칭, 조합원 수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됩니다.

3. 지난 2017년 4월 3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로부터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요청을 서면으로 받은 회원사께서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사 및 건설현장의 게시판에 공고함이 원칙이나 전체 운전원들에게 공고문을 촬영하여 문자로 전송해 주시고, 공고기간은 4월 3일(월)부터 4월 10일(월)까지입니다.

올해의 경우 민노측이 먼저 교섭을 요청하였으므로, 민노총 외에 다른 노조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한노총 또는 제3의 노조에게도 공고문을 송부하여야 합니다.

\* 한노총 연락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84, 3층

(전화 031-284-2909 팩스 031-233-2904)

4.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은 어느 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으면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줘야 하므로 이러한 사실이 있음을 알려주는 절차입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며 이 절차를 무시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원사께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절차를 따라야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이 사장 한 상 갈

